 <b>정보화사회실천연합</b> <small>열린사회</small>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9. 06. 10.(월) 조간(온라인 금일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06. 07.(금) 13:00	총 7쪽(붙임 5쪽 포함)	
담당부서	열린정부(070-7797-2583)	작성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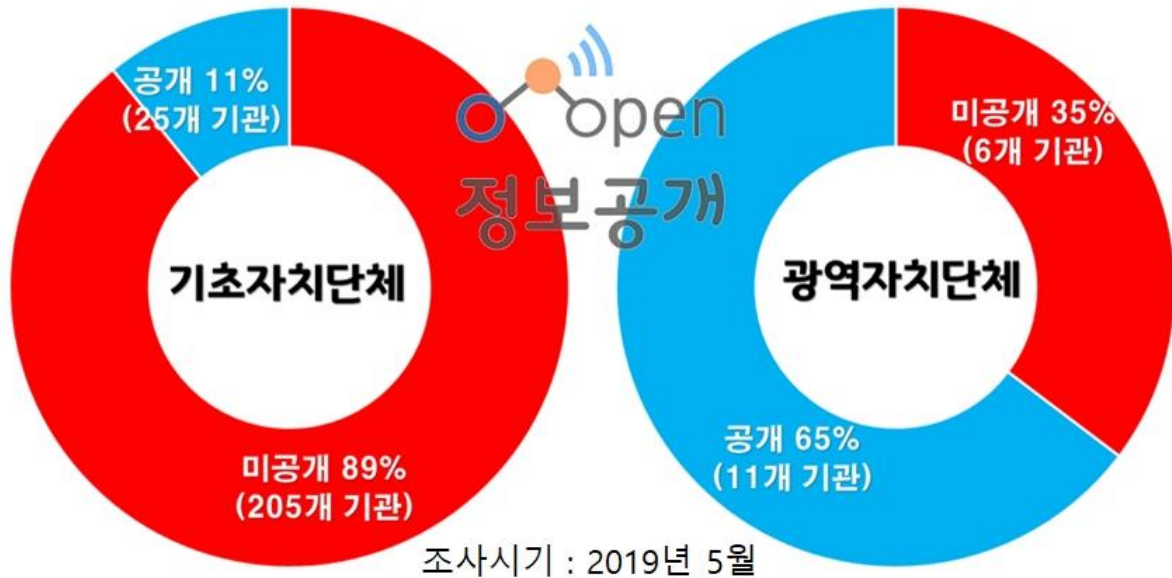
## 걸도는 국민의 알 권리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듯이 필요한 “정보목록”을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의하여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4년 안전행정부기원문공개를 시행하면서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2014년 이후 목록만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 정보목록에 대하여는 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이를 미공개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65%)기관 공개
  -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25개(11%)기관 공개
-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정보목록의 미공개는 행정기관들이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 정보목록 공개 현황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의 미공개에 대한 질의 답변 중 일부 기관은 질의내용 조차 이해 못하여 정보목록 대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을 답변으로 회신,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라는 떠넘기기 식 답변 등 상식에 벗어난 답변이 적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지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정보목록”을 공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이 문제는 행정기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의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또한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의 미공개에 책임은 각 행정기관이지만 정보공개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정책과는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끝-

-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목록 공개 현황
  2. 질의에 대한 책임회피식 답변 사례

# 붙임 1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목록 공개 현황

□ 본 조사는 2019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17) 및 기초자치단체(230)에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관한 질의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정보목록의 공개의무는 2003년 1월 29일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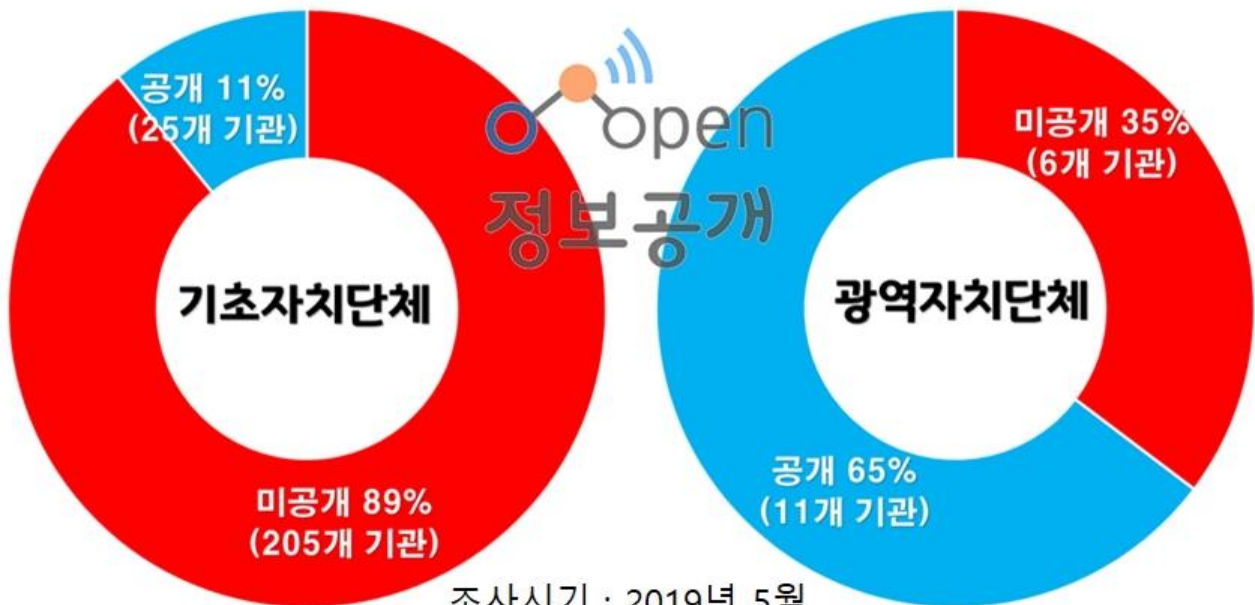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정보목록 공개 현황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광역자치단체의 2013년 이전 정보목록 공개 현황

광역자치단체명	2013년 이전 정보목록 공개 여부
강원도	공개
경기도	<b>미공개</b>
경상남도	공개
경상북도	공개
전라남도	<b>미공개</b>
전라북도	공개
제주자치도	<b>미공개</b>
충청남도	공개
충청북도	공개
광주광역시	공개
대구광역시	<b>미공개</b>
대전광역시	공개
부산광역시	공개
서울특별시	공개
세종특별자치시	공개
울산광역시	<b>미공개</b>
인천광역시	<b>미공개</b>

□ 기초자치단체의 2013년 이전 정보목록 공개 현황

광역자치단체 구분	미공개 기관수	공개 기관수	계
강원도	17	1	18
경기도	33		33
경상남도	18		18
경상북도	22	1	23
전라남도	22		22
전라북도	13	1	14
제주자치도	1	1	2
충청남도	12	3	15
충청북도	6	5	11
광주광역시	1	4	5
대구광역시	5	3	8
대전광역시		5	5
부산광역시	16		16
서울특별시	24	1	25
울산광역시	5		5
인천광역시	10		10
총합계	205	25	230

## 붙임 2

## 질의에 대한 책임회피식 답변 사례

### □ 답변서 사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4년 이전의 정보목록의 미공개 이유와 정보목록의 공개계획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보목록의 비치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2014년부터의 정보목록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정보목록 검색기간은 201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목록 공개시스템의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라 죄송하게도 하위 시도 및 지자체에서는 이를 기호에 맞게 변경 또는 관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중앙부처에 시스템개선 요청 등을 통해 더 나은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서 사례 2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준수 사항의 발생한 사유

정보공개포털은 귀하께서 알고계신대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포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개 처리한 정보 목록이 행정정보 포털에서 미표출 되는 여부에 대하여서는 행정정보공개 포털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미 공개 정보목록의 이행 계획

우리시에서는 정보목록 미공개 계획은 없으며 행정정보공개 포털에서 공개되면 즉시 시스템 연동으로 즉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 미 공개 정보목록 제출 요청

행정정보공개 포털 정상화되면 우리시 정보목록을 시스템 연동으로 공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서 사례 3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관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소관으로 정보목록 검색은 2014년 부터 시작하여 2014년 이후의 정보목록 부터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상 정보목록 검색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4년 이전의 정보목록 공개는 개인정보등의 공개여부 검토 문제로 정보목록의 공개시기는 미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 답변서 사례 4 (상식에 벗어난 동문서답식 답변)

처리결과 안내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목록 현황(2004.7.30.2013.12.31.).xlsx

- 끝 -